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982호 2013. 10. 1(화)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201호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1
-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202호 인천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3

기 타

-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13 - 205호 백석중학교 시설사업 변경시행에 따른 보상계획 열람공고(변경) ----- 6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3년 10월 1일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01호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담당과장”을 “보육 행정담당”으로 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제3조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는 제3호로, 제6호는 제4호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위원회의 위원 중 구의회 의원인 위원과”를 “위원회의 위원 중”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정책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3년 10월 1일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02호

인천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심의위원회) 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구의원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제4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술인담당으로 한다.

제10조(창작공간 지원)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을 위한 기관·단체 및 3년 이상 서구에서 예술 활동을 한 개인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문화예술활동 후원)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근로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13 - 205호

백석중학교 시설사업 변경시행에 따른 보상계획 열람공고(변경)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고시 제2013-49호(2013. 7. 25.) 『백석중학교 시설사업 변경시행계획』에 의거 인천백석중학교 학교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2013. 9. 26.

인천광역시교육감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백석중학교 시설사업변경 시행계획(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
- 나.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 다.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65-3번지 일원
- 라. 사업의규모
 - 교지 11,720㎡,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건축면적 1,250㎡

2. 보상계획

- 가. 보상시기 : 열람기간 경과 후 감정평가 하여 개별통지
- 나. 보상방법 : 현금보상
- 다. 보상금 산정방법 : 3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2인의 감정평가업자 선정, 평가 의뢰)
- 라. 보상절차 : 계약체결 후 소유권이전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3. 보상계획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13년 9월 26일 ~ 2013년 10월 9일(14일)

나.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구월동 1137번지)

인천광역시교육청 복지재정과 <☎032)420-8338>

☞ 보상대상의 세부목록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복지재정과에 비치하며, 공고기간 중 세부목록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위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

가. 토지 :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58-1번지 토지(1필지)

※ 변경 전(前) 지번 오류 정정(백석동 83-1번지⇒백석동 58-1번지)

나. 물건 : 해당 없음

5.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며,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써 갈음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복지재정과 재산관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